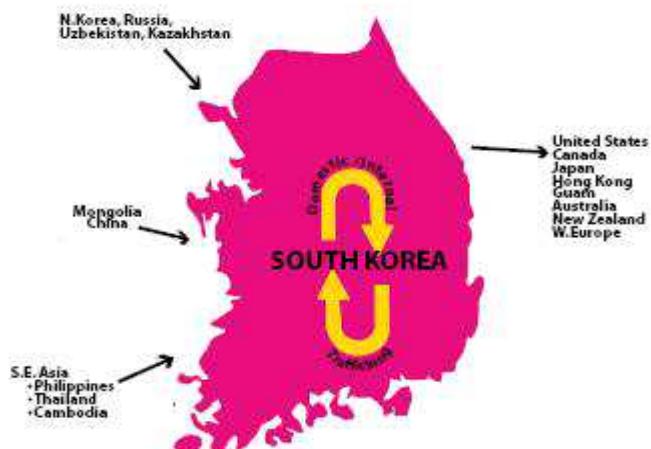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14th UPR Session

대한민국 인권상황 정기보고서
(UPR 보고서)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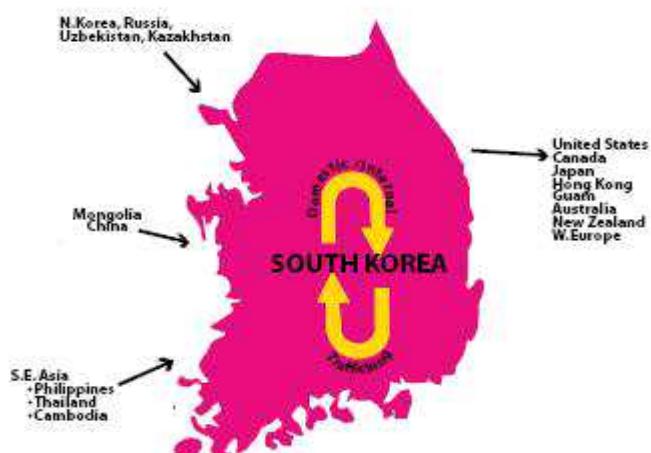
靑年와 함께 꿈꾸는
靑年와 함께 꿈꾸는

UNIVERSAL PERIOD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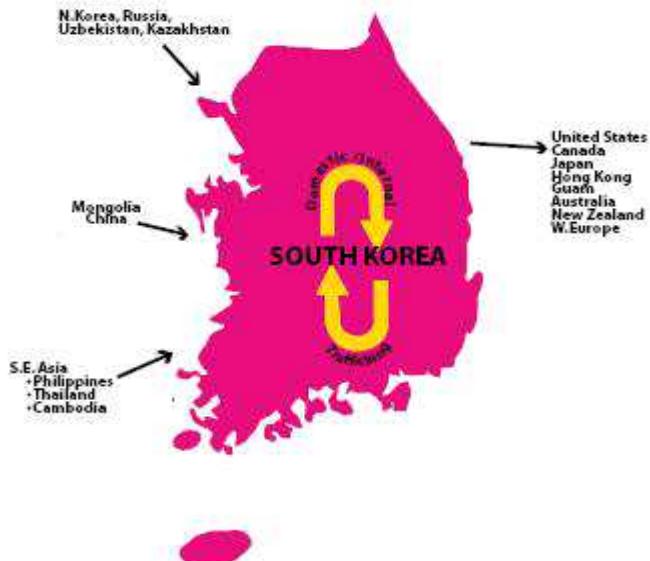
REPUBLIC OF KOREA

14th UPR Session

대한민국 인권상황 정기보고서
(UPR 보고서)



※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정기보고서(UPR)



차 례

1. ECPAT(엑팻) 소개
2.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진행사항
3. 아동청소년대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글로벌 개요
4. 한국의 상황
5.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국의 노력
6.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정기보고서(UPR)-한글
7.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정기보고서(UPR)-영문

1. ECPAT(엑팻) 소개



* ECPAT은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의 줄임말로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ECPAT은 1991년 아시아에서 아동 성매매를 근절시키자는 캠페인을 계기로 발족되었고, 83개 국가, 80개 그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UN의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이며, ECOSOC 고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 (사)탁틴내일이 ECPAT Korea로 가입되어 아동청소년이 성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 ECPAT International 주요 비전

아동에 대한 모든 상업적 성착취(아동 성매매, 아동대상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등)를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이 보호되는 세상 만들기

* ECPAT 지역소개

- 아프리카지역 (16개국), -아메리카지역 (16개국)
- 동아시아, 태평양지역(한국 포함) (11개국)
- 유럽지역 (25개국), -중동지역 (4개국),
- 남아시아지역 (11개국)



2. ECPAT Korea Tacteen(탁틴내일) 연혁

- 2004년 ECPAT Internatioal 한국대표로 가입
- 2005년 **키리바시 아동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해외 성매매관광 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2006년 **아시아지역 아동대상 해외 성매매관광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키리바시선원에 의한 성착취 피해아동에 대한 현지지원
- 2007년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
해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섹스투어리즘 근절 활동
- 2008년 **아동 .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3차 세계대회 참가**
- 2009년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인권보호) 1차 캠페인 실시**
대중성있는 홍보대사 선정으로 캠페인시작을 알림
- 2010년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인권보호) 2차 캠페인 실시**
아동청소년 성교육 확대를 위한 180,000명 서명운동진행
- 2011년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인권보호) 3차 캠페인 실시**
성교육 확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기반으로 국회청원
- 2012년 **한국인에 의한 필리핀 아동성매매관광 실태조사**

※ECPAT International은 The Body Shop과 2009년~2012년까지 4년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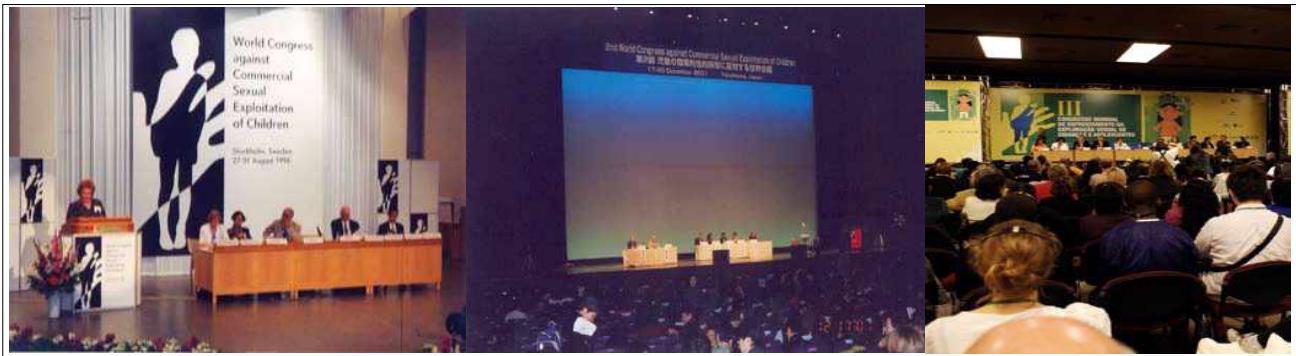
'Stop trafficking'의 이슈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전세계 아동 성보호를 위한 세계대회

구분	제1차 세계대회	제2차 세계대회
회의일자	1996년 8.27~8.31	2001년 12.17~12.20
개최지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요코하마
참가국	119개국	161개국
성과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철폐를 위한 선언문 및 행동의제 채택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강조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정무 제2차관	수석대표:한명숙 전 여성부장관

구분	제3차 세계대회	제4차 세계대회
회의일자	2008년 11.25~11.28	2016년 계획
개최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미정
참가국	137개국	-
성과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이행체결	-



*참고- ECPAT 지역회의 "RNRE workshops" (각 지역별 회의)

-회의내용: 각 지역 그룹의 활동내용 발표 및 네트워킹, 상업적 성착취 근절을 위한 지역적인 활동추세, 활동보고 및 주요활동계획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활동 추세



2011년 – 2012년 주요활동 계획



1.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진행사항

ECPAT과 더바디샵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캠페인은 장기계획에 힘을 불어넣고,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보장 받는 권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더바디샵과 ECPAT은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의 안전한 성보호를 위한 의지를 높이고 예방, 보호, 치료의 3가지 특별한 목적을 완수하게 하는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그 어떠한 국가, 어떠한 장소에서도 자신의 성적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들을 평가하고 각 국가의 목표 실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진행상황카드"를 작성합니다. 이는 각 국가의 목표 실현을 위한 의미를 부여하고 레벨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부분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각 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책임을 지어야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진행상황카드"는 한국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주요대책을 세우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현되는 상황을 나타내줄 것입니다. 주목할만한 노력은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정책, 피해자를 위한 주목할만한 변화에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약간의 진전을 가져온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정책이 부적절하고 많은 노력을 가져와야 할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정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노력에 도움을 주고, 아동청소년의 인신매매를 중지하는 필수적인 평가를 위함입니다.

2. 아동청소년대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글로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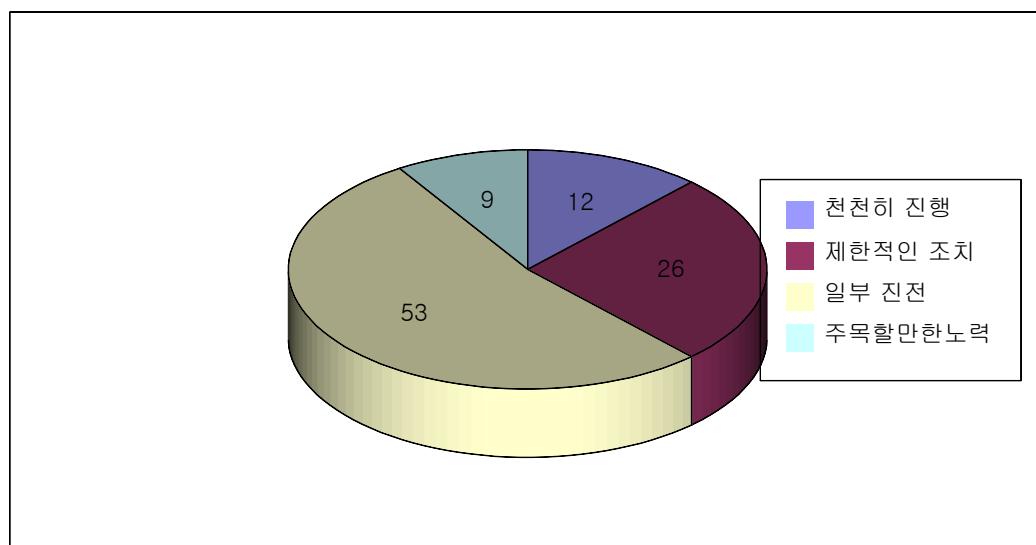
2008년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적착취 근절을 위한 3차 세계대회에서 137개국과 3,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세상 모든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적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고, 그 이후 각국의 노력과 의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습니다.

ECPAT과 더바디샵은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적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기존의 이행의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공동 강령이 가속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아동청소년 성적착취 근절을 위한 일반적인 개요를 4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소개합니다. 국가의 노력에 따라 '주목할만한 노력', '일부 진전을 이룸', '제한적인 조치를 이룸' 그리고 '천천히 진행.'이 그에 해당됩니다.

'주목할 만한 노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착취에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을 하였을 경우에, '일부 진전'은 전반적으로 그 국가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받 아들였으나 피해아동과 정책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이 남아있을경우에, '제한 조치'는 그 해당국가의 불충분한 노력과 인신매매의 거의 노력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천천히 진행'상태는 인신매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그림1.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주목할 만한 노력'은 12%, '일부 진전'은 25%, '제한적인 조치'는 53%, '천 천히 진행'은 9%로 나타났습니다.

그림2.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각 국의 노력

천천히 진행	제한적인 조치	일부 진전	주목할만한 노력
캄보디아		벨기에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에스파냐 스페인 태국	
멕시토	키프로스 그리스 인도네시아 스웨덴 인도 터키 체코 홍콩 러시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필리핀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한국	루마니아 타이완 덴마크 영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 한국의 상황

한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하여 '일부진전을 이룬' 53%안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정부는 성적착취와 성적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펼쳐왔고, 특별히 피해아동지원 핫라인설치와 쉼터운영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노력을 전반적으로 잘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인 틀 구조가 아직까지는 국제 기준에 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예방조치부분이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아동 성매매

현재, 한국의 아동 인신매매 비율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보고서에는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를 '여성'이나 '여성과 소녀, 여자 청소년'으로만 분류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외교통상부에서는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명수를 발표하였으나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자가 몇 명이었는지 등의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인신매매로 4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중 30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고, 2005년에는 인신매매로 4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중 28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국가는 자국에서 타국으로 자국민의 성을 팔기도하고, 그 반대의 경우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성을 거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주로 외국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신매매의 종착국입니다. 외국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되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데 그 국가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고, 중국, 북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온 피해자들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나, 대부분 나이트클럽, 바, 가라오케 바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종결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나라는 결혼위장비자를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역시도 다른 나라로 인신매매되기도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일본, 홍콩, 괌, 호주나 서유럽 등의 나라로 인신매매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여자아동청소년들은 티켓다방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인신매매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적착취와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경찰은 두 달간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였고, 그 결과 성매매의 91%가 인터넷을 통하여 성행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집중단속기간을 통하여 752명의 성매수자들이 시민단체를 통하여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빈곤, 폭력, 인권유린, 차별 등등의 이유로 아동인신매매는 아동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이용당하도록 방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육의 혜택이 없고, 성인의 강제력에 쉽게 굴복을 당하기 쉬운 아동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나 가족불화로 가출을 한 아동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다가 자발적으로 인신매매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매매산업은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삶의 방법과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결국엔 포주와 상업적 성매매에 아동청소년을 이용당하고 맙니다. 포주들은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을 조종하고 억누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친척이나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 역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산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기타방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취업알선을 해준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아동청소년 해외성매매관광을 자행하는 국가로 특별히 동남아시아등지와 남태평양의 섬 등지에서 해외성매매관광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2월, 키리바시 NGO와 유니세프에서 한국인에 의한 성매매를 보고하였고, 이에 한국의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꼬레꼬레아”라고 불리우는 한국인에 의한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국의 노력

A. 지역사회에 근거한 예방책

아동인신매매 사냥감의 표적이 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 한 것은 믿을만하고, 안전하게 그들의 삶의 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동인신매매의 늪에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해외연대를 통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보호, 역동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인신매매로부터 아이들을 둘러싼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아동성매매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약간의 돈을 받고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각각의 지역사회 수준에 맞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시스템과 사회적 복지, 법집행 실현이 필요할뿐더러 아동인신매매범들의 인신매매로 인한 수익금 압수역시도 필요하다.

아동인신매매 예방의 전략과 정책의 본질은 전체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연관을 맺고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각의 전략과 정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수립이후 이행의 단계에서도 당위성과 강제성을 가져야 하고, 아동을 둘러싼 어떠한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그림자에서도 아동이 철저히 보호받도록 힘써야 한다.

지역사회에 근거한 한국의 예방프로그램			
1-1.아동인신매매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규정	1-2.다양하고 넓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성	1 - 3.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식개선	1-4.CSEC를 위한 교사훈련 규정
		★	★
아동성매매와 상업적 성착취근절을 위한 다양한 국가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 프로그램에서 예방을 위한 일관성이 결여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협력과 협조의 모습은 있으나 여전히 아동인신매매근 절을 위한NGO와 기타관계자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함	아동인신매매와 상업적성착취근 절을 위한 다양하고 주도적인 의식개선으로 한국정부는 성장하였으나, 여 전히 지속적이고 이해력높은 지원이 필요함	CSEC를 위한 교사훈련의 과정들과 노력들이 높으나 교사훈련 과정에 대한 강제력이 떨어져서 이를 보완해야 함

그동안 한국정부는 많은 세미나, 캠페인 등을 주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상업적성착취와 아동인신매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개선에 의미 있는 진보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매매와 아동인신매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정책과 국가계획과 관련 종사자들의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한 연합, 예방책들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상업적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과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이 계획은 강요된 성매매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돋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향상을 도모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소년 보호법의 5개년 계획에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의 위험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고 2007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계획또한 아동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근절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책과 다양한 방면의 해결책에 대한 모색은 여전히 부족하다. 관련 NGO단체들과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로 인한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세계 아동청소년이 성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레벨에 준하여 평가하였을때에 한국정부는 아동인신매매와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캠페인, 세미나, 학술대회등으로 근절을 향한 국민의식개선에 많은 노력을 벌였다. 한국정부의 국가정책은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었고, 2월 22일은 아동성폭력추방의 날로 제정하여 시민단체의 참여와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반대운동을 펼쳐왔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식개선을 위해 힘썼다. 또한 NGO와 연합하여 해외성매매관광예방과 아동성매매근절을 위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하여 반성매매에 대한 국민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캠페인과 활동은 계속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연계되어 주도적인 참여를 보이는 커뮤니티, 단체, 아동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예방책의 한 부분으로서 학교의 교사들에게 상업적성착취 근절을 위한 교육

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은 실행하였으나, 교사 커리큘럼에 의무적으로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것에는 미 실행단계에 있다. 성폭력예방을 위한 '안전과 건강'이라는 성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아동청소년성교육센터에서 2008년 질높은 교육커리큘럼으로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이교육과정은 선택과정에 머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2010년도 보건교과과목에 성매매에 대한 교육내용을 신기로 하였고, 2007년에는 2009년 초까지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성폭력을 예방에 효과적인 성평등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근절"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요청합니다.

1. 상업적성착취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단일화와 정책의 통일화
(2008년 3차세계대회 리오선언- "2013년까지 국가행동계획수립" 권고사항)
2. 국내와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부 측의 엄격한 법집행
3. 가출청소년의 성매매유입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과 해당사회복지사의 훈련 향상
4. 상업적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보호

B. 국제적 기준에 의한 국내법의 조화

성적인 목적을 위한 아동청소년 인신매매와 아동청소년의 성적유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정과 국제적인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사이의 조화롭고 긴밀한 이행이 있을 때만이 아동청소년이 재 범죄와 재 피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협약/ 법	비준년도-한국
아동권리협약(CRC)	1991년도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라피 선택의정서	2004년도
인신매매 처벌, 방지를 위한 의정서(아동,여성)	2000년 사인,비준은X
ILO협약 182번. 최악의 아동노동	2001년도

한국의 법적 구조			
2-1.아동매매 선택의정서의 비준	2-2.인신매매 의정서의 비준	2-3.국가입법의 조화	2-4.아동대상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법
한국은 2004년도에 OPSC(아동매매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였다.	한국은 인신매매 의정서를 2000년도에 사인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의 형사법은 인신매매 범죄에 있어서 특히, 아동인신매매 공급자에 대한 형사법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법집행과정에서 아동친화적인 집행을 위한 단일화된 특별법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한국은 아직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제기준에서 보았을 때 효과적인 법적 체계의 제정이 요구됩니다. 인신매매의정서는 아동성매매 근절을 위한 중요한 영역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 특별법제정으로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란 성적생산을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성을 팔게 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과정에서 무력이 행사되고 의도적인 계획이 동반되며 사람을 수단으로 하여 수신, 전송, 운반 또는 은닉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미끼로 하여 아동청소년을 통제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 법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최소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인신매매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아이들의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 증거나 증언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아이들의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친근하고 편안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아동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중심의 조사, 수사여건이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탁틴내일은 아동성범죄 조사 시,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조사과정에서 재상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위하여 40,000명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아동인신매매를 조사 및 자발적인 청소년성매매의 특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특별법이 아직 수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피해자로 바라보고 좀 더 세심히 대하는 것이 아닌 마치 범죄자처럼, 범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사와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면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중심으로 법 집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법과 국제적 기준의 조화"에서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한국은 국제법이나 국제의정서에 대한 부분에서)
 - CRC(아동권리 협약)은 1991년 인준하였고,
 -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는 2004년에 인준
 - 인신매매(특히 여성, 아동)의 의정서는 2000년에 사인하였으나 아직 인준하지는 않았습니다.
 - ILO노동기구 협약의 182번 최악의 아동노동에 대한 인준도 2001년 하였습니다.
2. 한국형사법이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3. 특별법의 통합, 법집행과 조사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들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해당경찰 훈련, 시스템 등)
4. 인신매매조약에 인준

C.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성적인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아동들에게는 적절한 돌봄과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별한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아동들은 성적인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하며 많은 권리와 요구를 무시당하고 유린당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관심과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이를 행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자국민, 타국민이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39조에도 나타나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			
3-1.도움요청 시스템구성	3-2.쉼터 지원	3-3.피해아동을 위한 의료적 지원	3-4.정서적 치료지원
특별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움요청시스템 이 구축되어있다.	한국정부는 NGO를 통하여 아동보호쉼터를 지원하고 있고, 쉼터들간의 네트워킹이 형성되어있으나, 지원서비스의 가치향상을 위한 매커니즘이 없고, 여성,여자아동청 소년만을 위한 시설이며, 한국어만이 지원된다.	피해아동에게 의료적 지원을 주기위하여 상담센터와 의료적지원센터 가 원활히 움직이고 있다.	피해아동의 정서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치료적인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잘 훈련된 담당자들이 부족하다.

한국정부는 성적이용을 당한 피해아동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들을 차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을 보면, 한국의 정부는 프로그램 지원과 쉼터의 네트워킹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쉼터에 대한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를 당한 10대와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위한 상담서비스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센터는 42개가 있고, 이중 28개는 성인을 위한 센터이고, 14개는 특별히 아동들을 위한 상담센터입니다. 또한 16개의 원스톱서비스가 성폭력피해아동, 학교폭력과 성적인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아이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개의 자립지원센터는 직업스킬과 직업훈련에 집중하고 있고, 10개의 그룹홈도 피해자를 위하여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NGO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에 따르면 성적이용을 당한 아동, 청소년은 지원시설과 자활시설에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NGO, 경찰, 정부는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지지를 위한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가 더해갈수록 피해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시설과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여자아동청소년의 범주를 넘은 지원시설과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577-1366은 이민자들을 위하여 8개의 언어로(영어, 필리핀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핫라인이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언어지원의 확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중간과정의 확충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다양한 위급상황 도움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388은 24시간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도움이 연결되는 원스탑 서비스로서 위급상황에서 직접 개입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출장을 나가서 아동청소년을 위급상황에서 구출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상담지원을 위하여 www.kyci.or.kr에서는 상담지원을 하고 있고 1366역시 성폭력 등의 긴급한 사안을 막기 위한 핫라인을 구성하여 16개 시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17은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긴급 핫라인이고 이 역시, 24시간 제공

되어 상담사와 경찰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1577-1366은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핫라인입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피해지원"에서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정부는 현재의 피해아동 지원에 질을 높이고,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모두를 위한 피해 지원 확충과 외국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확대
2. 피해청소년 수용시설의 확대와 적절한 회복 강화, 치료보호시설의 관리자 훈련실시

6.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정기보고서(UPR)-한글

요약

본 기고문의 목표는 2008년 최종 일반 정기 검토 이후 한국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CSEC: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에 관한 국제 의무 및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한 검토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08년 11월 한국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방지 제3세계 회의에 참석하여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기로 약정하였다.

한국은 인신매매방지 부속의정서를 제외하고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취급하는 주요 국제조약의 당사국이다. 의정서 비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내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사는 관련 국제법 기준을 준수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의 부재와 아동 성매매와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연루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기소율이나 유죄판결률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CSEC를 취급하는 각종 국내 실행계획이 입안되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격차와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 제도가 개발되었으나(예: “해바라기 아동 센터(Sunflower Children Centres)” 및 “원스톱 지원 센터(One-Stop Support Centres)”) 아동 CSEC 피해자는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래 조사 결과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활동 현황에 관한 ECPAT International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 – 대한민국: 2판, 2012와 아동인권위원회 최종 견해 분석: 대한민국, 2012년 2월(협약 제44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검토)을 비롯하여 관련 문헌에서 도출하였다.

1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현행 규범과 제도적 구조

1.1 법적 구조

1.1.1 국제법 표준

한국은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뿐 아니라 ILO 최악의 아동노동 협약 제182호와 같이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주요 국제법 표준을 비준하였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 부속의정서에 조인하였으나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았다.

주요 권고: 한국정부는 인신매매방지 부속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1.1.2 국내법 구조

1.1.2.1 아동 매춘을 취급하는 법률

한국은 「아동 성착취 보호에 관한 법률」¹⁾(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이나 「매춘 및 관련 행위 알선 처벌에 관한 법률」(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2004)²⁾과 같이 아동 매춘을 취급하는 법률을 다수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은 관련 국제법 기준에 따라 아동 매춘을 정의하고 아동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아동 매춘을 조장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범죄자 처벌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동 매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며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법원이 집행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 권고

- 아동 매춘을 취급하는 조항을 검토하여 아동 성범죄자에게 일관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국외자료과 주 : 우리나라 현행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임

2) 국외자료과 주 : 우리나라 현행법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보임

1.1.2.2.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취급하는 법률

아동 성착취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취급하는 조항은 OPSC 관련 조항과 일치한다. 동 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단순 소지 행위(배포 의사가 없는 소지)도 처벌함으로써 OPSC의 범위를 넓어선다.

이에 덧붙여 한국은 2008년 OPSC가 제공하는 보호를 세분화하는 성적 의도를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 유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인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중단을 위한 리우데자네이루선언과 행동 촉구의 요구대로 아동 성착취 방지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동이 연루되는 외설 자료를 즉시 삭제하거나 기술적으로 방지 또는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자료에 연루되는 개인의 기소율은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혐의로 체포된 개인은 3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유인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온라인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청소년 키퍼 프로그램")은 일반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수 년간 온라인 유인행위 사례가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요 권고

- 한국 국내법 구조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의도적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 CSEC를 담당하는 한국 법집행 당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범죄자 기소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자에 부과되는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 아동과 그 가족이 유인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2008)을 숙지하고 관련 당국에 유인행위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발해야 한다.

1.1.2.3 아동 성매매를 취급하는 법률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2004)은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인신매매 의정서에 명시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동 법에 의거하여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피난이나 수취, 채용, 이동, 이전 행위는 강압이나 위계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는 위에 언급되는 행위는 아동의 동의나 사용 수단을 불문하고 “인신매매”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인신매매 방지 법률 구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범죄자의 유죄판결 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2010년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은 6명에 불과하다.

주요 권고

- 매춘 및 관련 행위 알선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아동 성매매를 취급하는 조항이 인신매매방지 부속의정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 아동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는 한국 법집행 공무원은 성매매자 기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1.1.2.4 아동 성매매관광 관련 범죄와 치외법권 법률을 취급하는 법률

「아동 성착취 보호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과 「형법」(제3조: 국내인의 해외 범죄)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자행하는 CSEC 관련 범죄에 대해 지역외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외국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국내인을 기소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08년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개정 여권법」(Amendment of Passport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내국인에 대해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고 기존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성범죄를 규정하

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서 추방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동 법의 집행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유의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권고

- 한국 당국은 외국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국인 기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1.1.2.5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

2008년 한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유죄판결 이후 10년간 명부에 제공된다. 교육기관 책임자나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명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부는 2010년 1월 이후에만 제공되며 2010년 1월 이전 유죄판결은 제공되지 않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되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에 덧붙여, 「아동 성착취 보호에 관한 법률」(2005)은 등록된 아동 성범죄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는 “학교나 민간 교육기관, 미성년자 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즉, 경비 사무소), 피트니스 센터, 미성년자의 출입이 잦은 기타 기관에 대해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간” 고용이 금지된다. 관련 고용주는 해당 구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담당자는 예비 종업원이 아동 성폭력 기록이 있는지 신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2007년 특정 성범죄자 GPS 추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여 아동 성범죄자를 비롯한 특정 성범죄자 추적을 목표로 GPS(글로벌 위치추적 시스템)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2008년 전자 태그 착용이 명령된 개인 574명 가운데 감시를 벗어난 자는 7명에 불과하다고 신고되었다.

1.2 정책 구조

한국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취급하는 국가행동계획(NPA: National Plans of Action), 특히 2004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2007년 개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CSEC 현안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 국가 실행 계획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덧붙여 동 실행 계획의 수립과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위원회는 국내 아동 성매매 피해자 수가 높고 범죄자 기소 및 유죄판결 비율이 낮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요 권고

- 한국 당국은 CSEC 관련 쟁점을 취급하는 현행 국가 실행계획이 노력의 격차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성을 갖고 효과적인 공조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2. 현장 인권 증진 및 보호: 국제 인권의 구현

2.1 현장의 상업적 성착취를 취급하는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의 시행에 대한 주요 관심 분야

2.1.1 아동권리협약 및 OPSC 시행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된 메커니즘의 부족

2006년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KMCCR: Korean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를 설립했다.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KMCCR의 독립성이나 협약 감시 운영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권리

-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이 KMCCR에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동 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1.2 아동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원조 및 지원 서비스의 부족/제한

매춘 및 관련 행위 알선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SEC 아동 피해자는 국내 청소년 쉼터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센터, 청소년 상담 센터와 같이 아동을 위해 설립된 쉼터 및 기관에서 보호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 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 아동 센터” 10곳을 설립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 성폭력과 학교 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종합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도 15곳 설립하였다.

해당 쉼터의 설립과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제정이 현실적인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위원회는 최근 남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요 권리

남아뿐 아니라 여아 성착취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적절히 취급하는 재활 서비스(의료 및 법률 지원, 상담, 교육, 훈련)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14thUPR session(October2012)

ECPAT Korea is the ECPAT network Affiliate Group in South Korea (Tacteen Naeil). ECPAT Korea was established in 1995 and focuses o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provides education and training for caregivers and counselling for child victims and implements preventive programmes o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ECPAT International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is the leading global network working to end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trafficking). It represents 82 member organizations from 75 countries. ECPAT International holds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Website: www.ecpat.net

Executive summary

This contribution aims to provide a review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regarding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in Korea since the last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2008. In November 2008, the Government of Korea participated in the Third World Congress agains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during which it committed to undertake more initiatives to protect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Korea is party to the main international treaties addressing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should be prioritised.

In regards to domestic legislation, the main concerns are the lack of compliance of human trafficking laws with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and the low rate of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individuals or organisations involved in child trafficking and child pornography.

Various national plans of action addressing CSEC have been created. However, their content must be made consistent with each other and their coordination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avoid gaps and duplication of efforts. In terms of child victim care and support, many specialised institutions have been developed to provide relevant assistance (e.g. “Sunflower Children Centres” and “One-Stop Support Centres”), however, boy victims of CSEC do not have access to adequate rehabilitation services.

The following findings are drawn from relevant literature, including the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South Korea: Second edition*, 2012 an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February 2012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1. Current norm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1 Legal framework

1.1.1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South Korea has ratified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protecting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as well as the *ILO Convention No. 182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However, although the Government signed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rafficking Protocol), it has not yet been ratified.

Key recommendation: The Korean government must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1.1.2 Domestic legal framework

1.1.2.1 Laws addressing child prostitution

South Korea enacted several laws addressing child prostitution, such a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2004). These laws define child prostitution in compli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and punish individuals wh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 children, as well as those who facilitate child prostitution. However, these laws are not consistent with regard to penalties for offenders. It is unclear which law is applicable to child prostitution cases and the penalties inflicted to offender may vary according to the law enforced by the courts.

Key recommendation:

- The provisions addressing child prostitution should be reviewed and harmonised so that consistent sentences can be applied to child sex offenders.

1.1.1.1. Laws addressing child pornography

The provisions foun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addressing child pornography ar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OPSC. Offenses covered by the Act even go beyond the scope of the OPSC by criminalising mer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without the intent to distribute).

In addition,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Grooming* in 2008, which criminalized soliciting a child or youth for sexual purposes, which also elaborates on protections provided by the OPSC. Furthermore, as requested by the *Rio de Janeiro Declaration and Call for Action to Prevent and Stop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ct on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imposes obligations to online service providers to immediately delete or technically prevent or block obscene materials involving children.

The rates of prosecution of individuals involved in child pornography related matters, however, are low. For example, in 2010, only 3 individuals were arrested for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Grooming* as well as the government's programme to prevent online grooming ("Youth keeper programme") are not well known by the general public and or by children. Therefore, only a small number of cases of online grooming have been reported to the police over the last few years.

Key recommendations:

- The Korean domestic legal framework should prohibit the intentional access of child pornography.
- Korea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 charge of CSEC cases should make greater efforts to prosecute perpetrators of child pornography related offenses. Penalties imposed on offenders should be stringent.
- Develop more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to make sure tha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know about th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Grooming* (2008) and are able to report cases of grooming to relevant authorities.

1.1.1.1 Laws addressing child trafficking

The (2004) is not compliant with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e Trafficking Protocol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trafficking. Under the Act, the harboring, receiving, recruiting, transporting or transferring of a child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will be deemed trafficking only if force or a deceptive scheme is used. However, Article 3 of the Trafficking Protocol expressly stipulates that the acts referred to above shall be considered “trafficking in person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child and the means used.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anti-trafficking legal framework, the rate of convictions of offenders is very low. In 2010, only six individuals were convicted for human trafficking related offenses.

Key recommendations:

-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should be urgently amended so that provisions addressing child trafficking are in line with the standards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 Korean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trafficking cases should make more efforts in prosecuting traffickers.

1.1.1.2 Laws addressing child sex tourism related offences and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the *Criminal Code* (Article 3: Overseas crime of nationals), provides fo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CSEC related offences committed abroa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Korean

courts have prosecuted Korean nationals having sexually exploited children in foreign countries.

In 2008,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an innovative piece of legislation: *The Amendment of Passport Act*. This Act restricts the issuance of passports to nationals who commit offences abroad and potentially confiscates existing passports.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this Act does not contain specific provisions addressing the commission of sex crimes and, as it only applied to persons de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its enforcement may not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travelling sex offenders.

Key recommendation:

- Korean authorities should make greater efforts to prosecute Korean nationals who sexually exploit children in foreign countries.

1.1.1.3 Specific laws aiming at preventing child sex offenders' re-offending

In 2008, Korea enacted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s* under which personal information of registered child sex offenders is made available on the register for 10 years following conviction. The register can be accessed online and offline by director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r parents of minors who live in the same city or county. However, as the register has only accessible since January 2010, convictions prior to January 2010 are not available.

In addition to the public disclosure of registered child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2005) places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registered child sex offenders. Child sex offenders are prohibited from employment in "schools,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facilities for minors, childcare facilities, children's facilities, apartment management offices (i.e. security guard offices), fitness centers, and other institutions frequented by minors" for 10 year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ir sentence." Concerned employers are legally bound to report any incidence of sexual offenses committed on their premises. Therefore, persons in charge of relevant institutions must conduct background checks of potential employees for records of child sexual abuse.

Korea also enacted *The Act on the GPS Tracking of Specific Sex Offenders* in 2007, initiating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aimed at tracking specific sex offenders including child sex offenders. However, in 2008 it was reported that

only 7 out of 574 individuals ordered to wear the electronic tag managed to escape surveillance.

1.2 Policy framework

Korea has established national plans of action (NPA) that address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notably the 2004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amended in 2007).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a comprehensive National Action Plan that would address all CSEC issues.

In addition,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this Plan of Ac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concerned by the high number of children victims of trafficking in Korea and the low rates of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offenders.

Key recommendation:

- Korean authorities should ensure that current national plans of action addressing CSEC related issues are consistent and are coordinated effectively to avoid any gaps or duplication of efforts.

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2.1 Key areas of concern with regards to the implementation of children's rights laws and policies addressing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n the ground

2.1.1 Lack of independent mechanism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SC.

In 2006, Korea established the Korean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KMCCR) aimed at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Optional Protocols. However,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highlighted the KMCCR's lack of independence and operational mechanism to monitor the Convention.

Key recommendation:

-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mmends that Korea clearly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KMCCR, with the objective of providing it with a clear mandate.

1.1.1 Lack of/limited available assistance and support services for child victims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victims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and access to care and support services.

Child victims of CSEC have access to care and support in several shelters and institutions established for them such as national youth shelters, help centres for victims of sex-trafficking and youth counselling Centr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10 “Sunflower Children Centres” that provide specific assistance to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The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15 “One-Stop Support Centres” that provide comprehensiv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to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school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Despite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of such shelters and care and assistance services is a real step forwar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ently pointed out the lack of rehabilitation services for boy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Key recommendation:

Ensure that both boy and girl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have equal access to rehabilitation services (medical and legal assistance, counselling, education and training) that adequately address their specific needs.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outh Korea – Second Edition*, 2012.

U.S. State Department,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2011*. Accessible at: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1/index.htm>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outh Korea – Second Edition*, 2012.
Ibid.

The Consolidated 3rd and 4th Periodic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8,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essible at: http://www.ecoi.net/file_upload/1930_1303249657_crc-c-kor-3-4-1.pdf

Choi, Young Hee, “Model laws on CSEC – Korea’s Legislation to Comba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presentation at ECPAT International Assembly 2011).

Korea NPO Coalition for UNCRC. Alternative Report Following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ccessible at: www.crin.org/docs/RoK_KNPOCCRC_CRC_Report_FINAL.doc.pdf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February 2012. Accessible at: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co/CRC_C_KOR_CO_3-4_en.pdf
Ibid.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February 2012. Accessible at: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co/CRC_C_KOR_CO_3-4_en.pdf